
2020년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계획



2020. 2.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2020년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계획

[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I 개요

1. 목적

- 가. 행정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주권주의’ 보장
- 나.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통한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경기교육의 대외 신뢰도 제고

2. 관련 근거

-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나.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 다.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II 2019년 운영 실적

1. 정보공개 처리현황

구분	청구건수	처리현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313	155	112	15	28	0	158

2. 청구방법별 현황

구분	청구건수	직접출석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기타
계	313	13	13	0	287	0

3. 공개방법별 현황

구분	공개건수	공개형태						교부방법						
		소계	열람시청	사본출력	전자파일	복제인화	기타	소계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온라인	기타
계	127	127	0	1	126	0	0	127	1	1	0	0	122	3

4. 공개여부 결정기간별 현황

구분	계	당일(즉시)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계	155	0	9	19	23	101	3	0

5. 기타 청구처리 현황

합계	처리현황						
	청구취하	이송완료	문서이송(오프라인)	종결처리	민원이첩	정보부존재	기타
158	37	12	32	39	0	38	0

6. 정보부존재 처리 현황

계(건수)	1~3일	4~7일	8~10일	11~20일	21일 이상
38	9	19	8	2	0

7. 비공개 사유별 현황

비공개건수	법령상 비밀·비공개(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제3호)	재판관련 정보 등(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제5호)	개인 사생활 침해(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제7호)	특정인의 이익·불이익(제8호)
28	0	0	0	0	23	5	0	0

8.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개최횟수	심의건수	심의사유			심의결과				
		이의신청	결정곤란	기타	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기타
3	3	3	0	0	0	1	1	0	1

9. 주요 실적

- 가. 신규 및 전입 직원 정보공개업무 교육 실시(1월)
- 나. 2019년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계획 수립(3월)
- 다. 원문정보공개율 향상방안 계획 수립(3월)
- 라. 2019년(2018년 실적)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5월)
- 마. 사전정보 공표목록 정비(분기별)
- 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3회)

Ⅲ 보완할 사항

1. 신속·정확한 정보공개청구 처리 미흡

- 가. 법정 처리기한 준수(공개/비공개 결정 10일, 정보부존재 7일)
 - ※ 2019년 10일 초과 결정통지 3건 / 정보부존재 7일 초과 통지 10건
- 나. 기한에 임박한 처리 지양(전체 처리 건 중 8~10일 내 처리 65%)
- 다. 비공개(부분공개)결정 시 청구정보에 대한 비공개 사유 구체적 명시 필요

2. 사전정보공표 게시 현행화 미흡

- 가. 공표목록의 공개기준(공표범위, 주기, 시기, 방법) 미이행 및 공개자료 게재 지연
- 나.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해당 업무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모니터링 필요

3. 원문정보 공개 적절성 검토 필요

- 가. 원문정보 공개율 미흡
 - 1) 원문공개대상 문서: **교육장, 학교장 결재 문서**
 - 2) 2019년 원문정보 공개율

구분	전국 시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고양교육지원청
평균(%)	39	45.1	33.4

※출처: 정보공개포털(open.go.kr)

- 3) 관행적 비공개 처리 지양, 비공개 사유가 없는 문서는 기안자-검토자-결재자 판단 하에 적극 공개 처리 필요

나. 개인정보포함 문서 공개 사례

- 1) 2019년: 총20건 발생
- 2) 원문정보공개 시 개인정보포함 문서가 대국민 공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IV 2020년 운영 계획

1. 신속·정확한 정보공개 처리

가. 청구처리 구분 [전 기관]

- 1) 공개·비공개 여부 결정(처리기한 10일)

공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공개 원칙)
비공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분리할 수 있는 경우 ⇒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비공개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과 비공개를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 정도를 비교하여 공개여부 결정

- 2) 기타 청구처리 방법

즉시공개	법령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각종 홍보자료,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 등에 대해 공개여부 결정을 생략 / 공개 ⇒ 공개여부 결정을 위한 내부결재 불요
정보부존재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등 (처리기한 7일)
진정 / 질의	진정·질의로서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처리기한 7일, 일반민원에 준하여 답변처리)
중결처리	이미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청구한 경우

나. 청구처리 시 유의 사항 (청구처리 예문 붙임 1 참고) [전 기관]

- 1) 공개여부결정 10일, 진정·질의·정보부존재 7일 처리기한 엄수 (연장 시 기한 내 연장통지 필수)

- 2)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시 비공개 사유를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3) 공개여부결정 생략 가능한 경우(공개목적의 정보, 홈페이지 게시물 등) “즉시공개” 처리
- 4) 공개 + 정보부존재는 “공개” 로 결정 (비공개 정보를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부분공개”)

다.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교육지원청]

1) 심의 대상(시행령 제11조)

- 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나)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 다)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절차



※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생략

- 3) 각급 학교는 심의회 설치 의무 없으며 필요시 학교운영위원회가 정보공개 심의회 역할을 할 수 있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2. 사전정보공개

가. 공개정보 홈페이지 게시

[전 기관]

1) 주요 공개정보

- 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수의계약 내역, 예·결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
- 나) 각종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다) 안내문·홍보자료·교육자료 등 널리 공개하는 것이 이로운 정보 등

2) 유의사항

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정보는 공개를 누락하거나 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나) 공개정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접근성 강화(불필요한 로그인 절차 지양)

나. 사전정보공표 목록 정비

[교육지원청]

1) 추진중점: 공표정보 현행화, 신규 공표정보 발굴 및 추가

2) 공표대상정보(2019년 고양교육지원청 사전정보공표 125건)

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나) 기타 주요 추진과제, 공개정보로서 정보공개청구가 빈발하는 정보 등

3) 정비절차: 부서별 의견 수렴 반기 2회 보완(4월, 11월), 홈페이지 및 정보 공개포털 게시

담당부서	공표목적	공표항목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담당자	정보보기
초등교육과	초등교원 인가지정	종류별 등 현황	매년	3월	홈페이지	안동삼	정보보기
초등교육과	교사유치량	일반유치, 과외, 수업배치, 운영형	반기	3월, 9월	홈페이지	박준현	정보보기
초등교육과	교사유치량	뉴설, 신설, 폐기, 변경 등	매년	3월	홈페이지	노영미	정보보기
초등교육과	특수학교 설치현황	학교명, 학교수, 학생수,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현황, 현황 등	매년	3월	홈페이지	정보람	정보보기

4) 추진방향

가) 사전정보공개 공개기준(공표범위 및 주기, 시기, 방법)에 따라 최신 정보 업데이트

나)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사항 위주로 선정

※ 신설 업무 및 누락된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공표

다) 종결된 사업·일회성 정보 등 삭제대상 정보목록 정비

나.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및 고객수요 분석

[교육지원청]

1) 주요내용

가) 반기별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 분석

나) 공개청구 빈발 정보 및 대표 홈페이지 인기 검색어를 통한 청구인 관심정보 파악

2) 결과활용

가) 관심정보의 사전정보 공표목록 반영을 통한 적극적 정보공개

나) 정보공개청구 처리요령 및 적극적 정보공개 사례 안내, 청구처리 만족도 제고

다.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비

[교육지원청]

1) 추진근거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7조

2) 필요성

가) 비공개대상정보 범위를 부서별·사무별로 유형화하여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공개처리

나) 업무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 향상으로 정보공개 업무의 효율성 제고

3) 추진 방향

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화

나) 정보공개청구 빈도가 높은 비공개 대상정보 추가 지정,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의 지정 해제

다) 관련 법령의 개정, 부서 업무조정 사항 등 반영 최신회

4) 추진시기: 7월

3. 원문정보공개

가. 원문공개대상 문서 적극 공개

[전 기관]

1) 원문공개대상 문서: 기관별 해당 직위자 결재 문서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
실·국장(3급상당) 이상	교육장	3급(상당) 이상 기관장	학교장

가) 문서 생산 시 공개(부분공개) 분류된 문서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하여 공개

나) 공개대상 문서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건수를 기준으로 기관별 원문정보공개율 산정

2) 업무관리시스템 문서 생산 시 유의사항 (세부내용 붙임 2 참고)

가) 비공개 대상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문서는 “공개”가 원칙 (공개 목적의 문서는 반드시 공개)

나)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를 별도 첨부파일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적극 “부분공개”

다)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나. 원문정보공개 온·오프라인 지도점검

[교육지원청]

1)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소속기관 원문공개내역 수시 모니터링

가) 기관별 원문공개 내역 통보 및 조치사항 안내

나) 문서 재분류를 통한 기관별 자체 원문정보공개율 관리

- 공개 전환: 비공개 대상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문서
- 부분공개 전환: 비공개 대상정보를 일부 포함하는 문서로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를 분리 가능한 경우

원문정보관리						기관별 원문현황 목록					
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선택] 문서제목: [선택] 생산일자: 2018-09-01 ~ 2018-09-01 원문공개여부: [선택] 점검여부: [선택]						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생산일자: 2018-09-01 ~ 2018-10-27					
* 검색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음, 기관별 검색어 입력은 불가능.						* 표시되는 데이터량이 많을 경우 최대 1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조회기간을 1달 이상 처리할 경우 환경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통계는 실시간 통계로 영보공개포털의 원문공개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번호	기관명	문서 제목	원문공개 여부	원문 대상	점검 여부	기관명	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공개율
703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2018년 1월 공식실 업무 계획	공개	Y	미확인	91,195	13,469	2,526	14,995	16.34%
702	경기도교육청>	학교	2017 겨울방학 중 방과후학교 운영 및 안전점검...	공개	Y	미확인	244	4	3	237	2.9%
701	경기도교육청>	학교	2017 Happy Dream 실현 운영에 따른...	공개	Y	미확인	131	31	4	86	26.7%
700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12월 교육사생활 안전점검 결과 보고	공개	Y	미확인	193	50	0	143	25.9%
699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2017학년도 겨울방학 공식비 안내문	공개	Y	미확인	190	16	2	172	9.5%
698	경기도교육청>	학교	2017학년도 겨울방학 공식비 안내문	공개	Y	미확인	224	15	0	209	6.7%
697	경기도교육청>	학교	'2018년 새학기의 교육 실행하기' 관련 자료 제출	공개	Y	미확인	232	24	2	206	11.2%
696	경기도교육청>	학교	2017학년도 겨울방학 중 방과후학교 안전을 위한...	공개	Y	미확인	89	59	0	24	71.1%
						없고등학교	0	0	0	0	0.0%
						없고등학교	0	0	0	0	0.0%
						학교	91	36	0	55	39.6%
						학교	0	0	0	0	0.0%
						학교	0	0	0	0	0.0%

정보공개시스템(원문정보관리, 기관별 원문현황)을 통해 원문공개현황 모니터링

2) 오프라인: 원문정보공개율 및 조치사항 이행 저조 기관 대상 컨설팅 실시

가)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원문정보공개 절차, 원문정보공개율 향상을 위한 문서 생산 요령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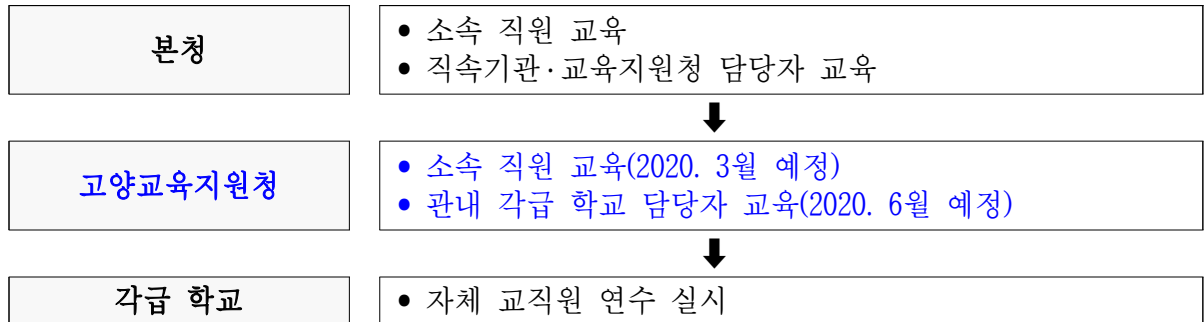
나) 컨설팅 실시 후 지속 관리를 통한 공개율 향상 유도

4. 교육 및 점검

가. 정보공개제도 교육

[전 기관]

1) 전 기관 교육 실시 : 본청 - 직속기관·교육지원청 - 각급 학교 전달교육



※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제5조 및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7조에 의거 전 기관 연 1회 이상 교육

2) 주요내용: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사전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나. 도교육청 주관 교육지원청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점검 [교육지원청]

1) 상반기: 민원행정서비스 지도·점검 (정보공개)

- 가) 정보공개청구 처리실태 확인: 처리기한 준수 및 공개여부 결정의 적정성
- 나) 정보공개제도 운영 컨설팅: 사전정보 공개, 원문정보공개 활성화 등

※ 세부 점검계획 수립 후, 교육지원청별 점검 일정 별도 통보 예정

2) 하반기: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적 점검

- 가) 정보공개제도 교육: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5조에 따른 소속 기관 및 직원 교육 실적
- 나) 선제적·적극적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개·비공개 세부기준 정비 여부, 원문정보공개율 등

※ 점검 완료 후 홈페이지를 통해 점검결과 공개



행정사항

1. 원문정보공개율 향상을 위해 적극 협조 (붙임2 문서 생산요령 참조)
2. 원문정보공개 시 개인정보포함 문서가 대국민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3.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정보공개업무 담당자 교육 후 자체 교직원 연수 실시

구 분	안내문 예시
공 개	<p>[청구내용] ○○○현황(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p> <p>[공개내용] 귀하께서 요청하신 ○○○현황을 공개합니다.</p>
공 개 (공개+부존재)	<p>[청구내용]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p> <p>[공개내용]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 중 ○○○사업계획서는 공개하며, ○○○관련 정보는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 정보부존재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개 정보와 부존재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 ⇒ '공개'로 처리</p>
부분공개 (공개+비공개)	<p>[청구내용] ○○○회의록(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p> <p>[공개내용] ○○○회의록(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p> <p>[비공개 내용 및 사유] 1.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2. 사유 : 상기 회의록 중 회의 발언자 인적사항은 공개될 경우,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해 비공개하며, 이에 해당 부분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비공개	<p>[청구내용] ○○○감사처분 자료(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p> <p>[비공개 사유] 1. 내용 : ○○○ 감사처분 자료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제6호 3. 사유 :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감사의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즉시공개	<p>[청구내용]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정보내용)</p> <p>[공개내용] 귀하께서 요청하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 공표된 자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아래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출력할 수 있으므로 정보소재 안내로 대신합니다. * 정보소재 : http://www.kengy.go.kr/nuri/etc/sub_page.php?pidx=472 ※ 사전정보공표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되어 있는 정보는 즉시공개 가능</p>
정보부존재	<p>[정보부존재 사유] 귀하께서 청구하신 ○○○현황은 ①실제로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②취합·가공이 필요한 경우③보존 연한 경과로 폐기된 자료④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로 정보부존재 임을 알려드립니다. ※ 정보부존재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통지</p>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문서는 “공개”가 원칙
- 관행적인 문서 비공개 설정을 지양하고 문서의 목적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문서는 반드시 공개하되,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를 별도 첨부파일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적극 “부분공개”

* 대국민공개여부	<input type="radio"/> 공개	<input checked="" type="radio"/> 부분공개	<input type="radio"/> 비공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목록공개					
* 공개제한근거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1호	<input type="checkbox"/> 2호	<input type="checkbox"/> 3호	<input type="checkbox"/> 4호	<input type="checkbox"/> 5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6호	<input type="checkbox"/> 7호	<input type="checkbox"/> 8호
공개제한사유	<input type="text"/>								

첨부 최대[내부:10MB,관내발신:10MB,행안부유통:5MB] 파일추가 파일읽기 파일삭제 PC저장

※ 기록물 관리지침에 의거 붙임 파일 첨부시 암호화 또는 압축파일을 금지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정보공개청구서.pdf	16.49 KB	<input type="radio"/> 공개	<input checked="" type="radio"/> 비공개
--------------------------------------	----------	--------------------------	--------------------------------------

※ **부분공개** :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의 공개여부를 분리하여 구분이 가능한 경우 예시) 결재문서 본문은 **공개**하고, 첨부파일은 **비공개** 설정

※ (구)업무관리시스템 기안 시 본문에 대한 공개여부 설정이 가능하였으나, **K-에듀파인시스템에서 본문에 대한 선택은 할 수 없고, 무조건 “공개”로 설정됨**

- 목록공개여부: 정보공개법 제8조에 따라 문서의 목록(제목) 공개여부는 “공개”가 원칙(단, 문서 제목에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목록 “비공개”)